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홍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571

발의연월일: 2025. 4. 3.

발 의 자: 박홍근・이수진・한민수

박지원 · 남인순 · 이소영

이훈기 • 박상혁 • 박홍배

김현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, 택시, 버스 등 화석연료 대중교통 수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.

전기택시를 택시 부제에서 제외하는 등 정부의 전기자동차 택시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구매했던 택시운전자들이 유가보조금 지원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임. 이는 2020년 수소자동차의 대중교통화 촉진을 위해 수소차의 충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.

이에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확대함으로써 전 기자동차의 대중교통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제7항 및 제51 조의4 등).

법률 제 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7항 전단 중 "제2조제6호"를 "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"로, "수소"를 "전기 또는 수소(이하 "수소등" 이라 한다)"로 한다.

제51조의4의 제목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수소"를 각각 "수소등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수소"를 각각 "수소등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수소"를 각각 "수소등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수소와"를 "수소등과"로, "수소 연료보조금"을 "수소등 연료보조금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"수소"를 "수소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또는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"로, "수소에 대하여 수소"를 "수소등에 대하여 수소등"으로 한다.

제79조제1항제5호 중 "수소"를 "수소등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0조(재정 지원) ① ~ ⑥ (생	제50조(재정 지원) ① ~ ⑥ (현
략)	행과 같음)
⑦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	⑦
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 또	
는 시장・군수는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운송사업자가 「환경친	
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	
촉진에 관한 법률」 <u>제2조제6</u>	제2조제3호에 따
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	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법
운행하기 위하여 <u>수소</u> 를 충전	제2조제6호
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	<u>전기</u>
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이	또는 수소(이하 "수소등"이라
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・지급	<u>한다)</u>
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	
으로 정한다.	
8 · 9 (생 략)	8 · ⑨ (현행과 같음)
제51조의4(<u>수소</u> 연료보조금의 지	제51조의4(<u>수소등</u> 연료보조금의
급정지) ① 특별시장ㆍ광역시	지급정지) ①
장・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	
지사 또는 시장・군수는 운송	
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	
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7항에 따른 보조금(이하 "<u>수소</u> 연료보조금" 이라 한다)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.

- 1.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<u>수</u> <u>소</u>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<u>수</u> <u>소</u> 연료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
- 2.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<u>수소</u> 사 용분에 대하여 <u>수소 연료보조</u> 금을 지급받은 경우
- 3. 실제 충전한 <u>수소와</u> 다른 유 종 또는 연료의 단가를 적용 하여 <u>수소</u> 연료보조금을 지급 반은 경우
- 4.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 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 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 을 거부・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
- 5. (생략)
- ②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

<u>수소등</u>
1
<u>소등</u>
<u> 수소등</u>
2
<u>수소등</u>
<u>수소등 연료</u>
보조금
 3 <u>수소등과</u>
 3 <u>수소등과</u>
 3 <u>수소등과</u> <u>수소등</u>
<u>수소등</u>
수소등

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해당 사업소에서 충전된수소에 대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.

제79조(보고·검사 등) ① 국토교 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 장·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 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 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 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 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- 1. ~ 4. (생 략)
- 5.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 지에 따른 유가보조금, 천연

<u></u> 「전기사업법」 제2
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
차충전사업자 또는 「수소경제
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
법률 __
수소등에 대하여 수소등
1 4 0 11 11 1 1 4 0
 제79조(보고·검사 등) ①
제19조(모고·검사 등) ①
<u>.</u>
1. ~ 4. (현행과 같음)
5

가스	연료보	L조금	및	<u>수소</u>	연
료보건	조금의	지급	과	관련히	┝여
확인여	이 필요	.한 경	우		

6. ~ 8. (생 략)

② · ③ (생 략)

<u>수소등</u>

6. ~ 8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